

# 2003년도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 요 약

-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효율적인 재해예방지원
- 2 재해다발 및 대형사고위험사업장  
  산재예방활동 강화
- 3 산재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
- 4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5 근로자 건강보호
- 6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 1. 사업장 규모에 따른 효율적인 재해예방 지원

#### 가. 대규모 사업장 자율관리 촉진

대기업 등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 120억 이상 건설공사)에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2000)구축을 지원하고, 신공정·신기술관련 최신 안전보건기술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단,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보건관리자의 중·개입 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 나. 중규모 사업장 대행관리 효과성 제고

##### (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

2002년도 말 현재 대행기관별 대행사업장에 대한 재해율 감소 실적과 2002년도 중 행정처분정도 및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우수대행기관에 대해 2004년도 점검 면제 및 국고지원사업 배정물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부실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 (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운영의 내실화

###### (가) 우수지도기관 인센티브 부여

전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도 중 지도사업장수 대비 조사대상 사망재해지수 및 지도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정도 등을 조사하여 우수지도기관(5개소)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감독을 면제하고 불량지도기관(5개소)에 대해서는 4/4분기 중 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나) 부실지도기관의 제재 효율성 제고

부실기술지도 또는 허위행위를 한 지도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되 업무정지를 신규계약을 제한하는 영업정지로 전환하여 기실시중인 기술지도 단절을 방지한다. 또한 기술지도대가의 85%미만으로 저가 계약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지도 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해당 현장은 패트롤 점검대상으로 우선선정한다.

###### (다) 지도기관 업무수행실태 점검

지방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인력·시설기준 준수여부 및 기술지도 횡수기준 준수여부, 기술지도 부실수행 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라) 지도요원 교육 강화

지도업무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기술지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도요원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보수교육과정을 분기1회 단위로 개설하고 교육과목에 전기·정보통신공사분야 과목을 추가하여 운영한다.

③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지도·점검 강화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통해 수시 확인, 선임지도하고 선임현황을 전산 입력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 및 300인 이상 안전보건대행 전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 충족여부, 직무수행여부, 겸임여부, 조치건의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1) 『CLEAN3D』 사업의 지속 추진

(가) 「CLEAN사업장」 조성 지원

「CLEAN3D」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대상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외국인근로자 채용사업장 등으로 조정(5,000개소)하고 사업주의 자체부담을 늘려 지원한도를 4,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사업주가 자기부담으로 작업장 조명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1,000원까지 지원하고 부족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조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안전관리 기술지원은 재해감소를 위해 비제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건기술지원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 예방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건강도우미사업은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증진·작업환경 개선서비스를 제공한

다. 또한 공사금액 2억원(전기·정보통신공사는 1억) 미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8대 가시설물 설치상태에 대한 집중기술지도, 교육 및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무료지원을 실시한다(기술지도대상이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3억원 미만의 현장을 대상으로 함)

※ 8대 가시설물 :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작업발판, 사다리,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이동식비계, 안전대부

(2) 「CLEAN3D」 사업 추진 지도·점검

안전공단지역본부(지도원) 및 관련 재해예방 민간단체의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장 주관으로 관련기관, 노사유관단체 대표, 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2. 재해다발 및 대형사고 위험사업장 안전예방활동 강화

가. 재해다발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1) 대상선정(1,000개소 목표)

(가) 일괄선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규모 이상으로서 02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이거나 02년도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작업환경 측정결과(평균 제외) 소음 90dB 이상, 분진 2배 이상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단, 건설업 및 PSM 대상사업장, 100인 이상 조선업

체는 일괄선정에서 제외한다.

## (나) 수시선정

각종 지도·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범위반사항이 일정요건에 해당되어 개선 또는 변경에 3개월이상 소요되거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과 중대재해발생, 직업병 발생 등에 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수시선정대상으로 한다.

## ② 추진방법

일괄선정사업장은 4.15까지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를 발부하고 사업장명단을 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사업장의 선정시부터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게 한다. 특히,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기술적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 등은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고 개선완료시까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 나. 안전보건 감독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규정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기타 지방노동관서별 감독관수 및 지역별 업종분포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적정한 수의 감독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감독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전진단명령을 병행하고, 산업재해조사와 병행하여 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와 감독결과 범위를 병합하여 형·사법적 조치를 취한다.

## 다.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조치 강화

### (1)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조사철저

03년도 중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협

력업체 재해 포함) 발생 사업장으로써 2건 발생시 지방노동관서 주관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3건(10,000인 이상 4건) 이상 발생시 지방청 주관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증원을 명령한다.

### (2) 사망재해 다수 발생사업장 사법처리 확대

03년도 중 연 3건(건설업 2건) 이상 발생사업장의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재해원인을 포함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가하여 양형수준을 상향조정토록 요구한다.

### (3)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으로써 02년도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은 상반기 1회 이상, 03년도 상반기 발생사업장은 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업종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4) 사망재해 다발 유형별 예방활동 강화

사망재해 취약유형인 협착(토올더기, 혼합기) 전도(곤도라, 리프트 등), 잠천(활상식입, 이동식 천동기계·기구) 충돌(건설·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발하는 기인물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집합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50인 미만사업장은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5)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체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위반으로 동시에 3인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한다.

⑥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조치결과의 신속한 홍보  
 중대재해발생보고는 전자결재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중대재해 3개월 이내의 부속자료 2인용 3만자 1인용 각각 100페이지 이하의 인터넷에 게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하고 중대재해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 또한 구속영장 신청기준에 의한 송치사건 중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매반기별 취합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

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확대 · 강화  
 일반건설공사의 기술지도대상을 현행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1인이 동일 시 · 도 지역내 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는 150억)미만의 3개 현장까지 관리가능토록 한다.

또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시 신청지역안의 지정기관수, 사업장수 등을 고려토록 한 지정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건설분야 추가청 지정제도도 폐지하며 지도기관의 지정관련 인력 및 장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② SOC 시설 건설현장 차등관리 내실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및 댐 등 6개 분야 SOC 시설 건설현장은 03년도 상 · 하반기 산업재해현황과 공사실적 등을 조사하여 3등급으로 구분 차등관리한다.

단, 02년도 중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우수인증현장은 당해 반기 등급 분류시 한 단계 높여 분류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의 경우 반으로 과태료 부과현장은 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분류하며, 산업재해율에 현장은 폐사실을 인정할 당시의 재해자수로 추산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의한 사법처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을 한 단계 낮추어 분류한다.  
 적색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재방문 계획이 합당으로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지도를 반기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 직무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또한 적색현장은 근로감독관, 공단직원, 재해예방 민간단체지도요원, 당해 현장의 감리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해당관서에서는 사법처리 등 조치를 한다. 그리고 연속 적색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공단직원과 함께 월 1회 방문하여 안전관리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집중 점검  
 (가) 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 ① 대상현장
- 시공능력순위 50위 외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으로써 환산재해율이 평균 환산재해율보다 2배를 초과하는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발생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적이 있거나 은폐신고가 있는 현장, 위험상황

## 신고접수현장

### ②점검방법

지방노동관서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해빙기점검은 2. 24~3. 15, 장마철 점검은 6. 2~6. 28, 동절기 점검은 11. 10~12. 6기간에 실시하며, 취약시기별로 감독관 1인당 3개소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공단직원과 합동으로 불시점검방식으로 추진한다.

③점검기준에 해당하는 현장을 선정하되 시기별로 다  
취약시기별 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안전관리  
비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관  
리비 사용위반 사실 적발시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하  
여 환수 또는 감액토록 조치한다.

### (나)건설안전패트룰점검

#### ①대상현장

공사금액 50억미만 현장으로써 추락, 낙하, 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현장을 선정하되 기술지도 대가의 85% 미만으로 저가 계약한 현장을 우선 선정한다

#### ②점검방법

감독관 1인당 월 3개소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2. 6, 11월을 제외한 매월 실시하고, 불시점검 및 감독관 단독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 ③점검내용

예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의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법령준수 여부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 위반 사실 적발시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환수 또는 감액토록 조치한다.

### (다)개인보호구지급·착용일제 점검(10월)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추락 등 재해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관 단독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되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여부, 보호구 검정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라)노동관서 자체점검

노동관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독관 1인당 3개소 이상 선정하여 점검한다.

### (4)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 활성화 유도

#### (가)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및 조치

시공능력평가액순위 9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자료 및 지방노동관서 보고자료와 산업재해로 인정 승인되거나 자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전 건설현장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포함하여 02년에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본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의신

청기회를 부여하고 심사 및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6월 말에 발표한다.

- 지하철 건설현장 특별점검
- 산업재해 다수발생 현장에 대한 검찰합동점검
- 100억원 미만 SOC 시설 건설현장 점검
-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 점검
- 미검정 가설기자재 제조·유통·사용실태 점검 등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른 재해율에 의거 재해율 양

호업체와 재해율 불량업체로 구분하여 차등관리를 하는데 재해율 양호업체는 해당업체 소속현장에 대해 격려문을 발송하고 03년 7월부터 1년간 각종 지도·감독을 면제한 반면, 불량업체는 7-8월 중 해당업체 소속현장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RQ)시가·감점(±2)토록 요청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도신인도 평가액 감액요청(최고 5%)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은 8월 중에 지방청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노동관서에서 실시하며 근로감독관 1인당 1회 이상에 한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장위주의 감독관 1인당 3개소 기준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한다.

- ①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② SOC 시설 적색현장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현장
- ③ 안전관리비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현장
- ④ 지방관서장이 자기공사(발주자 자체시공 공사)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비 적법계상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계상·사용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점검결과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에 통보하여 안전관리비를 감액조정하거나 환수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 명단을 조달청에 통보하여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RQ)시 감점토록 조치한다.

(다) 『불량가설기자재 추방대책』의 지속적 추진  
미검정·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생산·유통·사용에 대한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사용품의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등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를 추진한다.

(라) 기타 건설관련 제도 개선

- ① 6m파이프 서포트의 성능검정규격 마련 등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 개선(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개정, 상반기 중)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현행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상반기 중)
- ③ 중대재해 발생시 이후부터 당해공사 준공 시까지 안전공단의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안전관리업체 소속현장에 대한 확인검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상반기 중)

마. 화학물질 취급업체 공정안전관리

(1) PSM사업장 차등관리  
PSM대상사업장 중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완료 후 PSM 이행수준평가를 받아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한다.

- ① P등급: 공정안전보고서 자율이행, 각종 지도·점검 면제 또는 자율실시
- ② S등급: 연 1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 이행실태 점검

- ③ M등급 :연2회 이상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PSM 이행실태 점검,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지적사항 개선방법 지도,반기별 PSM 관계자 교육

### ② PSM 사업장이행수준 정기평가

00년도에 이행능력평가를 받아 차등관리 등급이 부여된 P및 S등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P등급 사업장은 본부에서 일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S등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별로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연도 PSM 이행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③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해 5-6월 중에 실시하되 노·사·정 및 학계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현행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의 핵심 현안사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 주제를 선정한다.

- ※ PSM대상시설에서 조사대상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작업중지, 사용중지, 안전진단 또는 안전조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M등급으로 수시 선정
- (1) 조선업 안전·보건 관리 실태 조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대상으로 3-7월 중에 실시하며, 조사내용은 02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현황과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수행 실태 등을 평가한다. 산재발생현황은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보험전산망 조회 및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토대로 조사대상연도 재해현황을 파악하되, 파

악된 재해현황은 해당업체에 송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는 해당사업장에 통보하고 불량사업장은 경고조치하는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청색·황색·적색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한다.

### ②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조선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9-10월 중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되 관할노동관서별로 사업장의 협조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받은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전달교육토록 조치한다.

### ③ 협력업체 사업주 교육

9대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삼호중공업, STX조선, 신아, 대선조선)의 하청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사례 및 사법처리사례 등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내용으로 9-10월 중에 사업주 교육을 실시한다.

### ④ 협력업체 근로자 교육

9대 조선사 하청업체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접, 도장, 연마, 고소작업 등 분야별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며, 모기업 안전부서에서는 작업개시전에 하청업체 근로자의 해당분야 교육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금지토록 유도한다.

### ⑤ 조선업 체험교육장 설치 추진

조선업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들이 실험·실습 위주의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시설 및 안전작업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

식할 수 있도록 가칭 조선업 체험교육장의 설치를 추진한다.

⑥ 조선업 산재취약요인 일제점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선박 건조·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공단직원과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청색 등급업체는 점검표를 사업장에 송부 노·사 자율점검토록 조치(점검결과 확인)하고, 적색업체는 점검회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사. 재난관리 체계 구축

(1) 위험상황신고실 운영 정착

위험상황신고제도의 홍보를 반기 1회 이상 지역 언론매체나 간담회, 노사단체에 안내문 송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접수된 신고사항은 반드시 위험상황 신고대장에 기록·유지하며 사실 확인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되 위험상황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의 비밀보장으로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2)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의 운영체계 확립

03년도 재난위험대상 시설의 선정, 점검 및 차등관리 및 신속한 재난대비 복구 및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 지원체제의 편성과 시기별 사전 지도·점검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방재관리체계 확립하며 점검결과필요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을 명령한다.

아. 산업재해 은폐 방지

(1) 건강보험부당이익금 환수자 조사

지방관서는 본부에서 분기별로 일괄과약하여 송부하는 건강보험 처리내역에 대한 산업재해 은폐여부를 조사한다.

(2) 소방본부(119구급대) 신고재해 조사

매분기 관할구역내 소방본부 신고재해 중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재해를 조사한다.

(3) 산재은폐 신고센타 및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 운영

산업안전과에 산재은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7. 1~7. 14)을 설정하여 동기간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유보한다.

3. 산재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

가.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1) 검사·검정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내지 35조의 개정에 따라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및 보호구 성능검정규정 등 하위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특히 방호장치 및 보호구 수거검정 차등화 등 신설제도 시행방안의 반영과 예비검정 제도 및 지정검사소 제도 도입, 기존의 검사검정규정에서 법 또는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2)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철저 이행 지도

프레스 및 양중기 등의 방호장치 결함 및 상시기능 점검 소홀 등에 의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내실있게 실시토록 지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제도를 안내(불이행시는 법 제7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하고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시 반드시 자체검사이행여

부를 확인함은 물론 자체검사의 방법, 점검사항, 합격 판정 등은 자체검사 규정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토록 지도하며 특히, 5인미만 영세사업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자체검사대행)을 활용토록 안내한다.

### ③ 지정검사기관지도 · 감독 철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년2회(5월 및 10월) 지정조건의 준수, 자체검사결과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을 실시하며 특히, 관외지역 검사결과와의 부실여부 확인을 철저히 한다.

### ④ 불량위험기계 ·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근절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 ·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검사 또는 검정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제조 · 수입업체 순으로 우선 선정하여 설계 · 완성 · 성능검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성능검정 미이행, 합격취소품 제조 · 유통여부 등을 철저히 정기점검한다.

또한 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합격취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는 합격취소품에 대한 조치내용을 수시점검으로 확인하고, 아울러 공단으로 하여금 방호장치 및 보호구 수거검정에 대한 연초 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하되 불합격품과 동일 등급 제품의 유사모델에 대해서는 집중수거하고 신규 · 단품생산 · OEM 생산 · 노동관서 또는 관련 제조자협회 요청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 수거하는 등 수거

검정을 철저히 실시토록하고 수거검정결과 불합격품은 제조 · 판매중지 명령 또는 수거 · 파기명령을 철저히 시행한다.

## 나. 산업재해 취약계층 보호

### (1) 외국인 근로자 안전 · 보건관리 강화

※ (가) 외국유관기관에서 안전 · 보건교육 강화로 명시하

① 외국유관기관에서 안전 · 보건교육을 받은 관서에서는 해당 직장사별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책임질 때 상·하직장의 직책을 통틀어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1회 이상 실시하되 외국인 근로자 재해다발 7개업종인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건설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금속재료제품제조업을 우선 실시한다.

### ②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업체 사업주 특별교육

지방노동관서별로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사업장을 수시 파악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완료 후 즉시 본부에 보고한다.

### ③ 외국인 근로자 집합교육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별 외국인 노동자 단체나 교회 등 종교 단체의 협조를 받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안전수첩, 표어 · 포스터 등 교육 · 홍보자료도 배부한다.

### (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장을 대상으로 CLEAN 3D 보조사업을 집중 홍보한다.

### (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 · 점검 강화

#### 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일제 점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고 최신 지식·정보 습득을 통한 전문직무능력 향상 및 국가현안 과제해결을 위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하여 국비 단기 국외 훈련을 실시한다.

## (다)화학물질 관리의 전산화

금지·허가물질, DMF, 카드뮴 등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우선 전산관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및 측정결과를 전산관리 한다.

## (라)사용금지·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 강화

벤지딘 등 사용금지물질 8종과 석면 등 사용허가물질 8종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업체 명단을 확보하고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현지조사하며, 당해 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하였을 경우 반드시 추적·조사한다.

## (마)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차등관리

### ①감독관 책임관리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유해인자(분진을 제외한 화학물질)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02. 하반기, 03. 상·하반기)과 직업병자가 02년도 또는 03년도에 발생한 사업장, 공단의 유해인자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중 작업환경 또는 시설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미비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심각히 우려되어 지방관서에 감독관 책임관리 대상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업장 및 기타 지방 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청별로 대상사업장 규모에 따라 2~5명의 감독관으로 책임관리점검팀을 구성하

여 점검실시 후 시정 또는 개선 명령하고, 그외 사업장은 해당관할관서에서 점검하며

-법 위반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관서의 담당감독관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개선이 될 때까지 책임관리(실명제 책임관리)하고

-직업병자가 발생한 경우 직업병자가 근무했던 부서는 물론 동종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며

-확인점검시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이 의심되거나 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책임관리 점검팀에 의한 재점검 또는 불시 작업환경측정 실시하고

-책임관리대상 사업장 중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경우 CLEAN 3D사업과 연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 ②유해인자별 중점관리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 분진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02. 하반기, '03. 상·하반기)과 노출기준 강화 유해인자(석면, 벤젠)보유사업장(03. 상반기) 산소결핍 위험작업 보유사업장(03. 상·하반기)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수시 선정하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CLEAN 사업장 조성지원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유도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호흡기보존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보건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지원 실시하고

-노출기준 강화인자에 대해서는 기준강화의 필요성 홍보 및 기준강화에 대비한 공학적 개선대책 중심으로 기술지원 실시하며

-6월을 「산소결핍 재해홍보의 달」로 지정하여 산소결핍의 심각성과 예방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산소결핍위험작업 보유사업장은 수시 DB 구축 및 예

방관리한다.

### ③작업환경 모니터링

직업병 요관찰자(C1) 다수발생사업장, 재측정을 실시한 사업장 등 작업환경이 불량(의심)하거나 측정결과 또는 직업병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등(02. 하반기, '03. 상·하반기)은 가능한 불시 방문을 통하여 작업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시 적발된 안전·보건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모니터링 결과(예·노출기준 초과)에 따라 책임관리·중점관리로 전환·개선될 때까지 관리한다.

### (바)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 실태점검

화학물질을 다량 또는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과 제조금지, 사용금지,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물질을 제조·유통시키는 다국적 기업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2003.10.1~11.30까지 MSDS 제도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업장이 발암성물질을 취급하거나 MSDS내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화학제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공단 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정밀검토한다.

### (사)화학물질정보카드(CIC)개발·보급

MSDS 작성항목 중에서 화학물질명, 유해그림, 물리·화학적 특성, 취급주의사항, 응급조치 등의 내용을 B6크기로 작성하고 코딩하여 보급하되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물질을 우선순위에 따라 4분기로 나누어 개발한다.

### (2) 사전예방중심의 신규화학물질 관리 강화

#### (가)신규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용실태 점검

변이원성 양성 등 특히 유해한 것으로 조사된 신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실제 사용하는 사업장 명단을 파악한 후 MSDS제도 이행실태, 「유해성 조사결과 조치사항통보서」제공 확인 및 신규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나)유해성 조사결과보고서 미제출사업장조사

신규화학물질 수입사업장으로써 유해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신규화학물질의 수입여부와 유해성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여부를 조사한다.

### 나. 작업환경 측정 실시 내실화

#### (1) 작업환경측정 실시 지도

측정대상 사업장은 년 2회 고용·산재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측정 및 횡수조정제도, 측정대상 물질 및 공정의 누락방지, 측정방법 준수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한다.

#### (2) 작업환경측정의 질 관리 시스템 강화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대에 따른 측정기관 정도관리를 강화(평가대상물질 확대 등)하고 측정기관의 측정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등급별 관리한다.

#### (3) 작업환경측정 대상 확대 및 방법 개선

독성 및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확대(16종에서 185종으로)하고 측정대상물질의 신규취급 또는 작업공정 변경시는 작업환경측정을

# 이달의 안전

의무화하며 노출정도에 따라 측정주기의 조정(노출 기준 초과시 측정주기 단축 등) 및 측정대상물질의 노출기준을 정기적으로 제·개정한다.

※ 학회별 1주 1회 측정(물질별 관리 유형에 따라)을 근거로 동 (4) 작업환경측정기준(자료)을 점검하는 방안 추진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인력·장비 등 지정요건과 작업환경측정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다. 산업보건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체제 구축  
산업보건 분야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노동부 본부(산업위생과의 신설) 및 안전공단 조직보강을 추진하고 물질안전보건센터를 대전 대덕화학단지 내에 건립한다.

## 5. 근로자 건강 보호

### 가.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강화

#### (1) 근골격계 질환 예방

##### (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사업장 관리 철저

근골격계 질환자 다수 발생 사업장 중 02년 또는 03년 질환자 5인 이상 발생 사업장은 상반기 중 유해요인 조사,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방법 등에 대한 공단 기술지원 후 하반기 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02년 또는 03년 질환자 2인 이상 5인 미만 발생 사업장은 유해요인 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 반기별 1회 이상 기술지원을 하고 예방 프로그램 시행을 유도하는 등 집중 관리로 차별화한다.

##### (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강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발업종별 개선사례, 관련 법규 및 지침, 국제동향 등 기술자료 서비스 제공 등

인간공학 코너를 개설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담 가능토록 구축한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 발생 사업장을 DB로 구축하여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를 보급하며 노사가 요구하는 경우 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토록 한다.

##### (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규정 명확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편을 신설하여 구체적 사업주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근골격계 질환 관련 해설서를 제작하여 사업장에 보급한다.

##### (2)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 (가)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지원

뇌·심혈관 질환 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 질환 다수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DB를 구축·관리하고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 (나) 건강증진 운동 전개

건강증진 운동 자율 사업장에 기술지원과 체력 측정 장비를 대여하고, 건강증진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며 기술지침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 (다)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교육·홍보

지방노동관서 주관하에 작업관련성 질환 다수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나.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

###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및 지도

#### ① 건강진단 실시 안내

홈페이지(www.molab.go.kr) 등에 등재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문을 활용토록 관내사업장에 안내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관내사업장에 대하여 1~2월

중 근로자건강진단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03년도 건강진단 실시를 안내한다.  
※노·사협의를 근로협력체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 중이 사업장은 상반기 기술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건강진단 실시 홍보

03년도 산업재해예방 홍보사업과 병행하여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를 홍보하고 03년도 「CLEAN3D」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를 지도한다

③ 건강진단 실시 지도

사업장각종방문지도·점검시 당해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하되 점검시 비정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지도에 작업환경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을 활용한다.

④ 5인 미만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 지원

03년도 「CLEAN3D」 지원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지원한다.

⑤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이행여부 확인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및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 사후 관리 조치를 판정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사후관리 이행을 지도하되 직업병 유소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⑥ 건강진단 우수기관 및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포상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발견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직

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노동행정유공자로 표창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평가·점검

① 본부에서는 00년~02년 방문평가를 받지 않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의학과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지도반이 방문평가와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03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② 지방관서에서는 1~3월 중에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제도 개선 추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현행 120종에서 200여종으로 확대하고 내원 및 개별 건강진단 실시 토대를 구축하며, 검사항목의 보완, 건강진단 전문성 강화, 근로자의 건강진단기관 선택권 강화 등 건강진단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다. 직업병 조기 발견 체제 구축

(1) 직업병 감시 체계 구축·운영

민간중심의 직업병 감시체계를 지역감시체계(3개 지역) 및 질병감시체계(2개 질병)로 각각 구축·운영한다

(2) 직업병 역학조사 실시

유해·위험 사업장 및 노·사 대표, 건강진단기간의 장,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방관서의 장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단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당해 사업장과 관할 관서에 통보하면 지방관서는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 ③ 건강관리수첩 관리강화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매분기별 신규 수첩교부자 명단을 관할지방관서에 통보한다.

### 라. 건설업『사업장주치의』제도 활용

공사금액 12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한 조언과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고혈압 등 기초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지도, 나쁜 생활습관 개선지도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장주치의」를 현장단위로 위촉토록 권고하고, 연말에 「사업장주치의」 활용 모범현장 또는 유공 「사업장주치의」를 선정하여 안전·보건감독 유예 및 포상 등을 실시한다.

### 마. 광산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1) 진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02. 9. 18)

내용속지

- 진폐법의 적용범위를 전사업장으로 확대
-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료하여금재심사에 참여
- 진폐정밀건강진단기관 중에서 진폐전문기관을 지정, 진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진단 실시
-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재지정 불가
- 진폐합병증 범위에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추가
-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검사(CT) 등의 추가검사 등

#### (2) 진폐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지도

채용시 및 년1회 정기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직

자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며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건강관리수첩 신청서 접수시 대상여부를 신속히 검토 후발급한다.

## 6.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 가. 산업안전·보건 Cyber 서비스 활성화

Cyber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적극적 개념의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Cyber Magazine』을 발간하고 맞춤형 Target 홍보를 실시하며 업종·직종 등 분야별 Cyber 교육을 실시한다.

### 나. 안전문화의 확산

#### (1) 안전문화운동 정착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산재예방에 대한 국민적 범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7. 1~7. 7) 행사를 개최하고 산업재해 예방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전사업장이 안전점검에 참여토록 지도·홍보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련 자체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기술자료 등의 지원을 통하여 안전운동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한다.

#### (2) 평생 안전교육 체계 확립

조기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하며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안전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교사, 장학사 등 직무연수(30시간)를 실시한다.

### 다. 노·사 자율안전관리 촉진

####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 활성화

사업장 지도·감독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토록 지도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와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는 등운영에 내실화를기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실태를 점검·지도한다.

③ 제11회 안전경영대상 시상

라. 공표제도 도입으로 사업주 경각심 제고  
산재다발, 산재은폐 또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등의 명단과 순위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미지와 연계, 최고경영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